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 2007-제29호 제출연월일 2007. 03. 30. 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청소년들의 상담, 보호·지원, 긴급 구조,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기능(안 제5조)
 - 청소년 상담관련 사업 수행
 -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
 -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·지원 기능의 수행
 -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사업의 수행
 -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
- 나. 재원의 조성 및 운영경비 조달(안 제8조)
 - 재원의 조성 : 출연금 및 수익금
 - 운영경비 : 보조금 및 수익금
- 다. 임원은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함(안 제9조)
- 라. 이사회는 이사장(부시장) 및 이사로 구성함(안 제10조)
- 마. 「사천시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」폐지(안 부칙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소요예산 5억원

(확보 2억원⇒운영비, 미확보 3억원⇒법인자본금)

다. 합 의: 기획감사담당관, 총무과장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07. 1. 19 ~2007. 2. 15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

- 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상담, 보호·지원, 긴급 구조,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법인 설립) 사천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.
- 제3조 (법인의 명칭) 법인의 명칭은 "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" 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라 한다.

제4조 (센터의 소재지) 센터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5조 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센터의 청소년 상담관련 사업 수행
- 3. 센터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
- 4. 센터의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·지원 기능의 수행
- 5.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사업의 수행
- 6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
- 6조 (정관에 관한 사항) ①센터는 정관에 「민법」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- 2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3.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
 - 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- 5. 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
 - 6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7.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
 - 8.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- ②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7조 (사업위탁 및 운영지원)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 관련 시설·사업·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8조 (재원조성 등) ①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정부 및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출연한 출연금
 - 2.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출연한 출연금
 - 3.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 - ②센터의 운영경비는 센터 운용수익금, 정부와 경상남도지사 및 사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제9조 (임원) ①센터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한다.
 - ②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이사회)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이사회를 둔다.
 -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 - ③이사장은 "부시장"이 된다.
 -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- ⑥이사회의 소집·의결정족수·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직원의 임면) 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.
- 제12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사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13조(사업계획과 예산·결산) ①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

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보고·검사·지도 감독)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업무, 회계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·검사·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.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15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16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사천시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관계 법 령

【민법】

제32條 (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) 學術, 宗敎, 慈善, 技藝, 社交 其他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 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.

【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】

- 제4條(設立許可基準) ①主務官廳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 設立許可申請이 있는 때에는 關係事實을 調査하여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由捐財産의 收入, 社團法人에 있어서는 會費·寄附金등으로 造成되는 財源의 收入(이하 각 "基本財産"이라 한다)으로 目的事業을 원활히達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設立許可를 한다.
 - ②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費徵收, 受惠對象에 관한 事項 기타 필요한 條件을 붙일수 있다.
 - ③公益法人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마다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. 이를 變更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【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- 제5조 (설립허가)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.
 - 1.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.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·기 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·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 우
 -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.

【청소년기본법】

- 제46조의2 (시·군·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과 청소년활동·자원봉사·참여·인권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제4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·군·구의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

【청소년활동진흥법】

제7조 (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)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에 한한다. 이하 같다)는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(이하 "지방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【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】

제40조의2 (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<개정 2006.3.29>) ①국가청소년위원 회는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·취소,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·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다만, 활동범위가 3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·취소,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·명칭·사무소의 소재지(특별시·광역시·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관한정관변경 허가를 제외한다. <개정 2006.3.29>

- 1.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
- 2. 한국청소년진흥센터
- 3. 한국스카우트연맹
- 4. 한국걸스카우트연맹
- 5. 한국청소년연맹
- 6. 한국유스호스텔연맹
- 7. 한국청소년상담원
- 8.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
- 9.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
- 10. 한국청소년수련원
-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6.3.29>
- 1. 한국스카우트연맹·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 특별시·광 역시·도 지부의 지도·감독
- 2.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·한국걸스카우트지원재단 및 한국청소년연맹육 성재단의 지도·감독

【국가청소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】

- 제4조(설립허가)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.
 - 1.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
 - 2.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음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산목록 등에 의하여 확 인 가능할 것
 - 3.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